

긴급입찰공고 사유서

1. 용역요지

- 가. 용역명: 미얀마 양곤 남부 신도시 시범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
- 나. 용역기간: 계약일로부터 160일
- 다. 사업예산: 금 500백만원 (부가가치세 포함)

2. 긴급입찰공고 사유

가. 사업의 성격

- 본 용역은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4 및 국토부훈령 제1151호 제8조제4항에 의거, 우리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용역임
- 본 프로젝트는 미얀마 양곤시 중심에서 남서측 직선거리 7km에 위치한 달라 지역의 400ha (120만평) 규모 부지를 조성하여 토지 및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임
- 본 용역은 시범단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부동산 시장조사, 미얀마 토지·부동산 제도 분석, 시범단지 지구계 결정, 사업환경 분석 및 토지 이용계획 수립, 적정 공사비 산출, 사업구조 수립, 판매 전략 마련, 재무적 타당성 검토, 법률검토를 수행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를 진단하고 미얀마 정부에 개발 제안 및 협의를 추진하고 예비사업자 및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

나. 긴급입찰 사유

- 본 사업은 '17년부터 한-미얀마 정부 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사업의 일환이며, '20년 K-city Network 및 EIPP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한 건으로, 이와 연계하여 연내 타당성조사를 통한 조속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한 바, 긴급입찰 공고를 통한 적기 자료 활용 필요
- 정상적으로 "협상에 의한 계약"을 추진할 경우(공고기간 40일) 최종 자료 작성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공고기간 단축 필요